

[사 건 명] 행심 2017 - 3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7. 8.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7. 9.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물리적 행위를 가하거나 위력을 행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학생을 막아주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학생과 코뿔소처럼 서로 이마를 맞대어 미는 행위를 한 사실만 인정한다.
- 나. 청구인은 ☆☆학교 ◇학년으로 폭력에 대한 사리분별력 및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이에 고의를 가지고 피해학생을 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때린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사건경위를 보면 2017. 3.경부터 7. 18.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학생과 피해학생이 어울려서 노는 상황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때리는 행동을 한 적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학생 측의 주장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 라. ☆☆학교 ◇학년인 어린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장난이나 다툼은 담임교사의 지도로 충분히 교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적 의무를 저버리고 졸속으로 학폭위를 개최하여 처분한 재량일탈 및 남용이 있다.
-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목격자 진술 청취, CCTV 확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를 게을리 하였고,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되면 마치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고 종결될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청구인이 학폭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진술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을지훈련 관계로 일정이 겹쳐 저녁시간에 예정된 학폭위 회의시간을 앞당기고 3명의 학부모가 동시에 들어가 진술하게 하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 및 다수 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거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피해학생은 머리로 막았다는 청구인의 행위를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장은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과 다르고, 청구인의 진술서, 피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판단하였다.
- 다. 학폭위 회의사건은 청구인의 양해를 구하고 앞당겼고, 진술방법에 관해서도 미리 동의를 구하고 처리하였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 및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7. 7. 19. ●●●와 피해학생이 부딪힌 후 ●●●가 피해학생을 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와 피해학생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나. ▷▷▷ 등이 가담하였고, ▷▷▷가 청구인에게 ‘○○아, 도와줘, 막아줘’ 라고 말하여, 청구인은 머리로 피해학생을 막았다.

다. 청구인의 담임교사가 2017. 7. 20. 및 2017. 7. 25.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자, 목격자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가해자들 대표로 합의를 진행 중이던 ●●●의 아버지에게 학폭위가 개최되기 6일 전인 2017. 8. 17.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어도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학폭위가 개최된다는 점을 문자로 통보하고, 2017. 8. 21.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폭위 참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문자로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학폭위 회의시간을 앞당기는 점과 3명의 학부형이 동시 참석하는 점에 대해 청구인의 양해를 구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성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 것처럼 잘못 안내하여 사실관계에 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모(母)의 교육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청구인의 모(母)가 학폭위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모(母)는 3명의 학부모들이 동시에 학폭위에 참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위 인정된 기초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해가 있었고, 3명이 동시에 참석한 것일 뿐 각자에게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고 달리 진술을 제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의 절차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

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청구인은 머리로 피해학생을 막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지 ▷▷▷가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 없이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된 기초사실에 따르면 ▷▷▷가 청구인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당시의 상황은 □□□와 피해학생 간의 싸움이 발생하고 ▷▷▷가 이에 가담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머리로 피해학생을 막은 행위는, ▷▷▷에 가세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재량권 일탈, 남용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낮음(1점), 고의성 없음(0점), 반성정도 매우 높음(0점), 화해정도 매우 높음(0점)으로 판단하였고, 합계 2점에 해당하는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지속성과 관련하여 2017. 7. 19. 이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2017. 7. 19.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성에 관해서 없음(0점)으로 판단하여도, 합계 1점에 해당하여 제1호 서면사과 처분에 해당하는 바,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 타당한 처분이다.

라.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